

의안 번호	제3717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1월 17일 김포시장
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12월 1일
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2월 15일
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2월 15일

2. 제안이유

- 가. 통진읍 옹정1리 일부(8필지)를 마송2리로 편입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, 주민 편의를 증진하며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통진읍 옹정리 58-109 외 7필지(2,832㎡)를 통진읍 마송리로 편입(안 별표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**주문사항** :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, 택지개발 단계에서부터 행정구역 조정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함. 또한, 교육환경 등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,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당부함.

10. **심사보고서 첨부서류** : 없음